

8.3(화) 석간 (인터넷 8.3(화) 10:30 이후)



보도자료

▶ 2010. 8. 3 배포
▶ 총 8쪽(사진 없음)

▶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팀장 이철우
사무관 최희순
TEL : 02)6902-8232
FAX : 02)503-9731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타임오프 시행 한 달..... 빠르게 정착

- 제도 도입율 64.1%에 이르고, 이 중 96.2%가 법을 준수 -

-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7월 31일 현재 올 7월 이전에 단협이 완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
 - * 865개소중 단협체결 371개소, 잠정합의 494개소
-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개소(96.2%)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개소(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개소, 보건의료노조 1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2개소이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사업장 현황 >

지도대상 사업장*	(잠정)합의 사업장		
	합 계	한도 준수	한도 초과
1,350	865*	832 (96.2%)	33 (3.8%)

* 근로자수 100인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10년 7월말 이전에 단협 만료되는 사업장

-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한국노총(718)			민주노총(455)			미가입(147)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소계	준수	초과
497 (67.2%)	496	1	229 (50.2%)	199	30	139 (89.7%)	137	2

* ()는 대상

-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개소(37.3%)로서, 한도 준수가 40개소(58.0%)로 한도 초과 29개소(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현황>

지도대상 사업장	(잠정)합의 사업장		
	합 계	한도 준수	한도 초과
185	69	40 (58.0%)	29 (42.0%)

- 이처럼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 당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한 취지대로 대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 붙임1 '주요사업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사례' 참고
-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개소 중 35개소(64.8%)가 면제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모두가 고시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현황>

지도대상 사업장	(잠정)합의 사업장		
	합 계	한도 준수	한도 초과
54	35	35 (100%)	0 (0%)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9개소)에 대하여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 자율시정 권고 : 대원강업 등 14개소

▲ 시정명령 대상 : 삼원강재 등 15개소(7.30~8.3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명령하였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붙임2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 참고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사례

사업장명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내용	비고 (현전임자수 → 면제자수*)
한국철도공사	○ 5.17 근무시간중 조합활동과 조합전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합의(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실무협의 진행 중)	64→고시 한도 (18명)이내
쌍용자동차	○ 6.16 근로시간면제(14,000시간) 합의(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실무협의 진행 중)	39→고시 한도 (7명)이내
비엔지스틸	○ 6.23 근로시간면제(5,000시간, 2.5명) 도입 합의 * 노조전임자 2명 별도 인정(노조 부담)	4→2.5명
한전KDN	○ 6.30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풀타임(2,000시간) 4명, 파트타임(1,000시간) 2명) 합의	3→5명
현대중공업	○ 7.1 근로시간면제(30,000시간, 15명) 합의 * 노조전임자 15명 별도 인정(노조 부담)	55→15명
LG전자	○ 7.7 근로시간면제(11명) 합의 * 노조전임자 9명 별도 인정(노조 부담)	27→11명
한국타이어	○ 7.7 근로시간면제(14,000시간, 7명) 합의	9→7명
농심	○ 7.7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5명) 합의	15→5명
한국델파이	○ 7.9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5명) 합의	14→5명
SK에너지	○ 7.9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5명) 합의	5→5명
하이닉스	○ 7.13 근로시간면제(28,000시간, 14명) 합의	21→14명
타타대우상용차	○ 7.13 근로시간면제(6,000시간, 파트 6명) 합의 * 노조전임자 2명 별도 인정(노조 부담)	11→3명
현대미포조선	○ 7.21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풀타임 4명, 파트타임 4명) 합의	14→5명
현대삼호중공업	○ 7.29 근로시간면제(10,000시간, 5명) 합의 * 노조전임자 5명 별도 인정(노조 부담)	14→5명

* 면제자 수는 노사가 합의한 면제한도 시간을 연간소정근로시간(2,000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환산

<붙임2>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

□ 자율시정 권고(면제한도 초과)

연번	사업장명	법정حد도 (사용가능인원*)	현 전임자수	합의내용	상급단체	권고일자
1	대원강업	6,000시간 (3명)	12	전임자 현행유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7.21
2	세신버팔로	2,000시간 (1명)	3	“	“	7.29
3	대성엠피씨	2,000시간 (1명)	2	전임자 현행유지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7.29
4	대한이연	3,000시간 (1.5명)	4	전임자 현행유지	“	7.28
5	대한칼소닉	4,000시간 (2명)	4	전임자 3명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7.29
6	세정	4,000시간 (2명)	2	전임자 2명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7.29
7	유성기업	6,000시간 (3명)	5	전임자 현행유지	“	7.29
8	세영테크	2,000시간 (1명)	1.5	전임자 2명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7.29
9	한국분말야금	3,000시간 (1.5명)	3명	전임자 1.5명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8.2
10	나스테크	2,000시간 (1명)	2	전임자 1명 (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	“	8.2
11	대동병원	3,000시간 (1.5명)	2	전임자 현행유지	민주노총 보건의료	7.29
12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5,000시간 (2.5명)	3.5	풀타임 2명, 파트타임 6명	한국노총 공공연맹	7.30
13	동신유압	2,000시간 (1명)	1.5	전임자 현행유지	미가입	7.1
14	삼익교통	1,000시간 (0.5명) *사용가능인원 3명	2	1,000시간 (파트타임 8명) *사용가능인원 초과	미가입	8.2

□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노동위원회 의결)

연번	사업장명	법정 한도 (사용가능인원)	현 전임자수	합의내용	조치내용
1	제철세라믹	1,000시간 (0.5명)	1	전임자 현행유지	7.30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2	한국수드캐미	1,000시간 (0.5명)	1	“	“
3	삼원강재	3,000시간 (1.5명)	3	“	“
4	에코플라스틱	5,000시간 (2.5명)	7	“	8.3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5	일진베어링	4,000시간 (2명)	4	”	“
6	디에스시	4,000시간 (2명)	4	”	“
7	광진상공	3,000시간 (1.5명)	4	”	“
8	이너지오토 모티브	2,000시간 (1명)	2	”	“
9	KCO에너지	2,000시간 (1명)	3	”	“
10	ITW대림	2,000시간 (1명)	2	”	“
11	전진산업	1,000시간 (0.5명)	1	”	“
12	한국펠저	1,000시간 (0.5명)	1	”	“
13	인지콘트롤스 경주	2,000시간 (1명)	2	”	“
14	청우	1,000시간 (0.5명)	1	”	“
15	오리엔스	2,000시간 (1명)	3	”	“

□ 부당노동행위 제재 대상(한도초과 급여지급) 사업장

연번	사업장명	법정 한도 (사용가능인원)	현 전임자수	임금 지급	조치내용
1	제철세라믹	1,000시간 (0.5명)	1	7.25 전임자 1 명분 임금지급 (0.5명 초과)	7.30 시정명령 → 불응시 사법처리
2	한국수드캐미	1,000시간 (0.5명)	1	“	“